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사후연구원의 법적근거 마련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5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8. 5.
3. 회부연월일 : 2026.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박사후연구원이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박사후연구원) 학교에는 박사후연구원을 두어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Postdoc)은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일정한 연구경력 단계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창출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받는 연구자로서,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논문 작성,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등 연구성과 창출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의 상당수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되어 고용안정성이 낮고, 박사학위 보유자임에도 급여 수준이 낮아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또한,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규모 및 처우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박사후연구원을 교수나 직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 소속과 지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²⁾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추진과제로 박사후연구원의 대학 내 법적 지위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2021.12. 박사후연구원의 처우와 관련한 자료는 ‘<참고 1> 박사후연구원 관련 주요 통계 현황’ 참조

2) 배상훈, 「박사후연구원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 2024.5.

□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일부 과학기술 분야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는 박사후연구원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³⁾
-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는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⁴⁾

□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거나 그 개념·자격·역할 및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박사후연구원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둘 수 있는 인력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학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 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박사후연구원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따른 역할과 법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내외 주요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사후연구원은 대체로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② 일정 기간 연구 또는 연구훈련에 종사하며, ③ 전문적인 연구역량과 독립성을 향상시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경력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특정 국가나 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교수나 선임연구자 등으로부터 지도·멘토링을 받는다는 점도 박사후연구원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있음.

[국내외 주요기관의 박사후연구원의 정의]

구 분	정 의	주요요소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의 추가적인 교육·훈련 과정	박사학위, 연구 훈련, 독립연구 자로의 성장
미국국립 보건원 미국과학재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향후 경력에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구 또는 학문적 훈련을 지도받는 자	박사학위, 기간 성, 멘토링, 연 구 독립성
미국 박사후연구원 협회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전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멘토링을 받으며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	박사학위, 기간 성, 멘토링

구 분	정 의	주요요소
미국 연구대학교육 협의회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직·연구직 진출을 준비하면서 상급자의 지도를 받되, 연구수행·결과발표 등에 자율성을 갖는 연구자	박사학위, 기간성, 지도, 연구자율성
일본 문부과학성	박사학위 취득자 등 중 임기제로 채용되어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박사학위, 기간성, 연구활동
EU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아직 상당한 수준의 연구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연구자 경력단계	박사학위, 경력단계, 연구 독립성

자료 :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배상훈(20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국내 대학의 관련 규정에서도 대체로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또는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분야의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박사후연구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신대학교·한국항공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에서는 전임교원 또는 일정 직급 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대학의 박사후연구원 관련 규정의 정의]

구 분	정 의
고신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한국항공대학교	박사학위 취득후 본교의 전임교수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부설 연구소 또는 사업단(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취득후 본교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각 대학 또는 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

구 분	정 의
창신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창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하여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자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정받는 연구자이지만 아직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지 못한 연구자 경력 단계

□ 따라서 박사후연구원의 연구과정에서 교원 등의 지도·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내외 연구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개념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원이나 선임연구자 등의 지도·멘토링을 통해 전문성과 연구의 독립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라는 점에서, 교원의 연구를 보조하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연구인력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박사후연구원을 정의하면서 ‘상급자의 지도’나 ‘교원의 지시·감독’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독창적인 연구능력의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5) 이에 따라 동일한 연구자가 기초연구법령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는 해당하면서도 교원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상 박사후연구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법률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법령 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개정안과 같이 “교원의 지도를 받아”라고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박사후연구원이 교원의 연구를 보조하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인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삭제할 경우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및 경력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지도·멘토링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자로서의 성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도·멘토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의 의미와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 아울러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박사후연구원의 기본적인 개념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의 목적·기간, 채용 형태 등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056호)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 동 법률안은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안 제14조), 임무 범위(안 제15조), 자격기준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안 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지위와 임무를 정한 후 구체적인 자격기

6)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및 경력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지도·멘토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상 필수적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운영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⁷⁾

-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법률에서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건 요건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원 및 조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인 자격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⁸⁾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학교에 들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그 자격기준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⁹⁾

□ 참고로, 교육부는 박사후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경력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교원의 직·간접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향후 교원 또는 전문연구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박사학위 소지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7) <참고 2> 개정안 비교

8)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나 박사후연구원이 일반적인 자격제도와 달리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경력단계에 있는 연구자라는 점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과,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박사후연구원의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건강보험 직장가입, 퇴직금 지급에 관한 임용계약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¹⁰⁾

이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사실만으로 박사후연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의 목적과 기간, 채용 형태 등을 종합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박사후연구원 관련 주요 통계 현황

구분		박사후연구원	
		빈도(명)	비율(%)
합계		4,291	100.0
연 봉	1,000만원 이하	99	2.3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91	6.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44	12.7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396	32.5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040	42.2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540	12.6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228	5.3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74	1.7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27	0.6
	9,000만원 이상~1억 미만	31	0.7
계약기간	1억 이상	21	0.5
	1년미만	647	15.1
	1년	2,855	66.5
	1년~2년	230	5.4
	2년~3년	374	8.7
	3년~4년	108	2.8
	4년~5년	33	0.8
	5년~6년	20	0.5
	6년~7년	4	0.1
	7년~8년	9	0.2
	8년~9년	2	0.0
	9년~10년	2	0.0
인건비 재원	10년 이상	4	0.1
	확인불가	3	0.1
	정부기관	3,444	80.3
	공공기관	204	4.8
	대학교	440	10.3
	민간기관	105	2.4
	공공연구소	45	1.0
	지방자치단체	13	0.3
참여 중인 국가재정지원 사업	기타	38	0.9
	확인불가	2	0.0
	BK21	452	10.5
	중견연구자지원사업	441	10.3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330	7.7
	박사후연구원 국내연수사업	202	4.7
	대학중점연구소사업	185	4.3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44	3.4
	기초연구실지원사업	119	2.8
	세종과학펠로우십	109	2.5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75	1.7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62	1.4

주.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상 조사(응답기관 128개 대학)
자료. 배상훈, 「박사후연구원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 2024.5.

□ 2019 학위취득자 평균 연소득(세 전)

(단위: 만 원)

구분	계열	학위취득시점	현재시점
박사후연구원	인문	2,400	1,800
	사회	2,439	2,875
	공학	3,672	3,956
	자연	3,745	4,171
	의약	3,003	3,612
	교육	2,975	2,980
	예체능	3,450	2,500
	전체	3,537	3,898
취·창업자	인문	2,262	2,692
	사회	3,492	4,073
	공학	6,385	6,456
	자연	4,937	5,141
	의약	5,133	5,156
	교육	3,240	3,429
	예체능	2,173	2,053
	전체	4,976	5,340

자료 : 박기범 외,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 이공계 신규 박사의 경력변화 추이

구분	졸업 직후(%)			졸업 1.5~2년 경과 후(%)			졸업 2.5~3년 경과 후(%)		
	박사후 연구원	취창업	미취업	박사후 연구원	취창업	미취업	박사후 연구원	취창업	미취업
공학계열	24.7	69.4	5.4	17.1	79.3	3.6	8.8	90.6	0.6
자연계열	40.5	48.0	11.5	31.1	60.8	8.1	25.6	69.6	4.8
의약계열	22.0	69.0	9.0	12.0	82.0	6.0	8.2	90.8	1.0

자료 : 박기범 외,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개정안 비교]

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 발의안	김준혁의원 발의안(현 개정안)
제18조(교직원의 구분) ③ 학교에는 연구 수행을 위해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의2(박사후연구원) 학교에는 박사후연구원을 두어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교직원의 임무) ③ 박사후연구원은 교내외 학문연구 및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교원·박사후연구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 박사후연구원,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이하 제23조까지 생략)